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2827호

제출년월일 2021. 7. .
제 출 자 오 강 현 의원

1. 제안이유

김포시 지역서점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 문화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나. 적용 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다. 시장의 책무(안 제5조)
라. 지원계획(안 제6조)
마.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바. 홍보(안 제8조)
사. 포상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다. 그 밖의 사항
  1) 입법예고
    가) 예고기간 : 2021. 7. . ~ 2021. 7. .
    나) 예고결과 :
  2) 부서협의
    가) 협의기간 : 2021. 7. . ~ 2021. 7. .
    나) 협의결과 :
  3) 관련부서 : 시립도서관

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2에 따라 인증 받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김포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계획)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2. 작가와의 만남, 독서동아리 운영,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
3.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

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, 전시, 토론회, 작가와의 만남 등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제2827호

제출년월일 2021. 10. 20.
제 출 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「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내용 중 제3조 적용범위 조항을 삭제하여 관내 지역서점이 제한없이 본 조례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, 지역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의 다양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함.

❍ 안 제9조(시행규칙)을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❍ 안 제3조(적용범위) 조항을 삭제함.

❍ 안 제8조(홍보) ‘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, 전시, 토론회, 작가와의 만남 등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.’를 ‘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 및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’로 수정

❍ 안 제9조(시행규칙) ‘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’ 신설

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하고,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8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홍보)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 및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조례안(원안)	수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2에 따라 인증 받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적용한다.	<삭 제>
제4조 ~ 제7조 (생 략)	제3조 ~ 제6조 (원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)
제8조(홍보)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, 전시, 토론회, 작가와의 만남 등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.	제7조(홍보)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 및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제9조 (생 략)	제8조 (원안 제9조와 같음)
<신 설>	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)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2. 작가와의 만남, 독서동아리 운영,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
3.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
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도서 우선구매)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 및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